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양효석 문예진흥원 정책실장

culture | art

새로운 예술정책은 현장 문화예술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전제, 중앙 정부의 역할을 집행·규제·감독자에서 기획·조정·평가자로 전환, 예술정책의 집행을 상당 부분 민간 예술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양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진경과와 의의

그 동안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한국문예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로의 전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한 문예진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고 현재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시행령이 6월 중 공포되면 곧 이어서 위원회의 위원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7월 말이면 초대 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위원회 설립위원회가 출범하여 정관을 비롯한 운영규정의 제정 등 문예진흥원의 청산 및 인계 인수 절차가 진행되며, 위원회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는 8월 말경 제1대 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위원회 전환 논의가 구체화되고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위원회 전환 과정은 오히려 문화예술계에 예술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각종 정책 담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 1999년 영화진흥공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의 전환 과정이 이러한 논의 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위원회 설립 후 2년여간 갈등과 파행적 운영을 겪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초기 시행착오를 좀더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문화예술계가 과거 전례가 없는 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다. 위원회 전환을 골자로 한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직후인 2003년 11월 25일 예총, 민예총을 비롯한 범 문화예술단체들이 공동으로 위원회 전환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자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문화예술계가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여기에는 문화적 가치의 발원지로서 기초예술이 고사 직전



에 처했다는 문화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위기감이 작용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 2004년 4월, 대표적 문화예술단체들이 망라된 기초예술연대가 결성되고 기초 예술을 살리기 위한 활동에 나섬으로써 예술인들 스스로 기초예술의 가치를 사회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2004년 6월에 발표된 문화관광부의 새 예술정책은 그 수립과정에서 수백 명의 현장 문화예술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종래 볼 수 없었던 예술정책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정책의 생명은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에 있으며, 예술현장은 예술정책의 입안지이자 집행지이다. 따라서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토록 하지는 것이 위원회 전환의 취지라고 할 때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향후 위원회의 논의구조 틀을 위한 선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의 예술정책은 예술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예술의 고유한 속성인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예술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장 문화예술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문화 예술위원회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역할을 집행·규제·감독자에서 기획·조정·평가자로 전환하고 예술정책의 집행을 상당 부분 민간 예술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양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바탕은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예술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정책에 대한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예술 현장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수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또한 민간 합의 기구인 점으로 미루어 예산 확보 등, 크고 작은

정책 입안에 문화예술인들이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의 성격【법 제23조】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법인 성격인 위원회의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② 위원회의 구성【법 제23조의 4】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고 있다.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법 제23조의 5 내지 제23조의 10】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11인 위원 중 유일한 상임위원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비상임으로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위촉하게 되며, 새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다.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은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독립과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위원의 결격사유 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정당법에 의한 당

원,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서 제외되며, 위원의 직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간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위원회의 직무(심의·의결사항) 【법 제23조의 11】

위원회의 직무는 기존의 이사회, 기금지원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가 수행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기금의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 위원 3인 이상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위원회 【법 제23조의 13】

위원회는 직무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문화예술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사무처 및 감사【법 제23조의 13】

위원회가 결정한 각종 정책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다.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⑦ 성과의 평가【법 제23조의 16】

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되는 반면, 사업 수행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규정됨으로 책임성 또한 강화된다. 문화관광부는 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의 측정·평가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⑧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법 제4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이미 설립된 문화재단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는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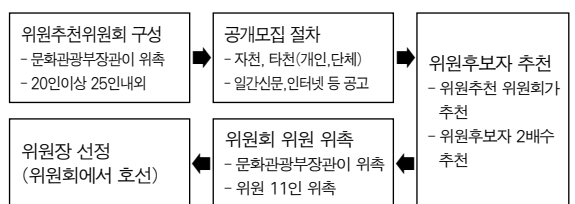
⑨ 협의체 구성【법 제23조의 17】

문화예술 지원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의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기간 상호 역할분담과 협력, 정보교환·교류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절차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그 동안 설립준비단의 논의와 입법 예고를 통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안)에 나타나 있다. 법 시행령은 2005년 6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여기서는 시행령(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① 위원회 구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②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추천위원회는 위원 구성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내용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삽입하였다. 추천위원 수는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시 관련단체 등에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고 추천위원회 구성시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학·미술·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 등 예술 분야별로 각 2인 이상,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등에 관련된 인사를 5인 이상 포함
- 추천위원 중 특정 단체에 소속된 자가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특정단체라 함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를 말함
- 추천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30 이상 되어야 함
- 추천위원은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야 함
- 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창작활동 또는 연구 및 기획, 행정 활동에 종사하거나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법조계·교육계·언론계·경제계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춘 자와 상기 경력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③ 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활동

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공개모집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는 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된다.

④ 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과 선정

추천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2배수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1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 후보자의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예술 분야와 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 남·여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안배를 이루도록 할 것.

- 위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 등 추천위원의 자격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운영의 성과가 앞으로 위원회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예술위원회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소위원회 운영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지원심의기능은 완전히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등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결국 독자적인 소위원회 운영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설립준비단에서 정리된 내용은 소위원회는 장르별 위원회와 기능별 위원회로 구분되어 운영하는 방안이며, 장르별 위원회는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장르별로 운영하되, 공연예술의 경우, 연극, 무용, 음악분과를 두어 개별 장르의 정책을 수립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공연예술 전반의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과 그 밖에 예술의 다양성과 복합장르, 대중예술 등을 포괄하는 다원예술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소위원회가 지원심의기능을 수행할 것이냐의 문제는 설립준비단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공모성 프로그램의 심의는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 대로라면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수립과 현장의견 수렴, 위원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분야의 진흥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심의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원회가 단순 심의기구일지, 정책기구일지는 소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르별 소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설(상근이 아닌) 개념으로 지속되는 것이 필요

문예진흥원은 2001년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미션을 “예술을 통한 국민의 창조성 계발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였고, 2004년 수립된 문예진흥혁신계획에서 “문화의 가치를 창조·확산하는 기초예술의 발원지”로 재설정된 바 있다.

The Mission

하겠지만, 기능별 소위원회의 경우는 위원회가 주력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유동적으로 만들어 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에는 또 다른 정책목표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구조로 탄력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범위는 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향후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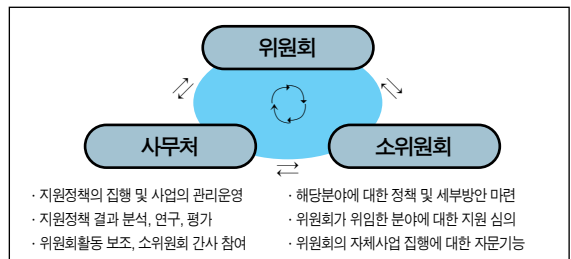
사무처와 소위원회의 연계 기능 활성화

위원회가 지원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본계획 등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사무처는 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행정적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와 사무처간에 연계기능이 활성화되어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소위원회와 행정기능을 대표하는 사무처가 원활한 소통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무처는 정책보조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진흥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 중심적 지향점, 위원회 운영방침 등 예술진흥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는 정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러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확정된 정책 방향 및 방침들이 소위원회에서 구체화되도록 하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각종 결정이 충분한 사전 연구, 자료조사, 평가·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소위원회가 예술현장의 현안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소위원회의 정책토론을 활성화

하여 월 1회 이상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예술현장의 장르별, 분야별 정책 형성그룹을 육성 지원하며, 특히 정책주도그룹 외에 비주류 등 소장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가 발간하는 문화예술, 뉴스레터 등 매체에 정책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가 확대되고 위원회의 미래지향적, 실험적(파일럿) 프로그램 등 새롭게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위원회의 검토와 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소위원회와 예술현장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현장의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소위원회 · 사무처의 기능 (예시)

- | | |
|------------------------|-------------------------|
| · 지원정책의 집행 및 사업의 관리운영 | · 해당분야에 대한 정책 및 세부방안 마련 |
| · 지원정책 결과 분석, 연구, 평가 | · 위원회가 위임한 분야에 대한 지원 심의 |
| · 위원회활동 보조, 소위원회 간사 참여 | · 위원회의 자체사업 집행에 대한 전문기능 |

위원회 초기의 과제

이상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운영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 그리고 설립준비단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 밖에 제1기 위원회가 출범 초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국가 지원정책 체계 정립

위원회가 예술정책과 지원행정의 본산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지원정책 체계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와 위원회의 역할 정립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이 민간 자율과 참여에 의한 예술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으므로 현재의 중복적인 기능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부는 새 예술정책 수립시 위원회의 기능을 다루면서 현재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을 위원회에 이관하고, 위원회가 민간에 대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할 계획임을 밝히 바 있다.¹⁾

다음은 각 진흥기구들 간에 서로 바람직한 방향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각 장르별·기능별 진흥기구(영화진흥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술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한다. 가령 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기초예술의 산업화'에는 이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위원회(재단) 사이에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과 지역위원회의 역할 분담방법을 예로 들면 중앙위원회는 국가적인 예술창작 역량 제고, 신진예술가 발굴, 전국 규모의 문화프로젝트, 지역간 순회사업 및 국제교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위원회는 당해 지역의 예술단체 활동과 지역축제 등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사업일 경우, 중앙과 지방위원회가 상호 협의, 협력하여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술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중앙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어 상호 연계 운영(Matching System)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 각 지방위원회간 지원의 형평성, 지원정책의 조율 등을 위해 상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에서는 ①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및 공동 협력방안 강구 ②지원기구간 협력, 교류, 역할 분담 등 지원정책의 효과성 및 일관성 제고 ③기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반 사항 협의 및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비전 설정과 지원구조의 혁신

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의 11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원회의 미션(이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션이란 한 조직의 존재의 목적, 사회적 사명을 서술해야 한다. 비전은 성장 전략을 통해 장기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미래상으로 미션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뜻한다. 문예진흥원은 2001년 수립된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미션을 "예술을 통한 국민의 창조성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였고, 2004년 수립된 문예진흥혁신계획에서 "문화의 가치를 창조·확산하는 기초예술의 발원지"로 재설정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말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문예진흥사업혁신 TF>에서 사업구조 개선과 함께 위원회의 미션 및 비전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으나 그 방향성을 제안하는 선에서 그쳤고 구체적인 설정에 대하여는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위원회의 비전은 위원회의 출범식 또는 초기 몇 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CI 선포와 더불어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소액다건주의의 개선, 복권기금 유입에 따른 사업유형의 재편 필요성, 위원회의 미션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목표 설정 등 지원사업 구조의 혁신적 재설계가 요구된다. 현재 기획예산처에 제출된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사업의 혁신을 위해 지원목표를 ①예술창조역량강화 ②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③문화예술교류활성화 ④예술의 보존과 계승 등 4대 목표에서 ①예술창조역량강화 ②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③문화예술매개활동확대 ④지역문화활성화 ⑤문화예술교류활성화 등 5대 목표로 수정하여 향후 사업구조 개편에 대비하고 있다.

예술 현장에 대한 평가와 조사

위원회가 문화예술계의 자율 정책기구로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및 예술현장에 대한 평가·조사·연구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즉 기초예술 현장의

1) 이에 따라 2005년도에는 무대제작지원사업 등 총 103억 원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이관되었다.

2) 미국의 경우 중앙의 국립예술기금(NEA)과 주정부의 주예술위원회가 있으며, 영국의 경우, 중앙의 예술위원회(ACE)와 지방의 9개 지역예술위원회(ACE지부형태)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정확한 파악과 즉각적인 지원정책의 적용 등 위원회가 차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위원회가 기초예술의 진원지로서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어야 문화예술계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한국형 지원정책 모델로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시로 거론되는 '예술의 위기'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예술에 대한 명확한 범주와 영역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당연한 명제를 도외시한 지원정책은 많은 부분 허수일 수밖에 없다. 예술현장을 살리는 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예술지향도를 사실적으로 그려놓는 실태조사 작업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무처 기능의 전문화


최근 사회의 혁신 속도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예술행정을 다루는 기관은 예술의 속성인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원회 사무처는 예술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제도 및 조직운영도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위원제 등을 통해 소위원회를 보좌하고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진흥 정책결정에 참고가 되는 정책 검토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 등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연간 수천건의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는 만큼 예술 현장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공하여 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 사무처는 정책연구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매뉴얼화 등 지식경영체계 구축과 직원 전문화를 통해 전문 예술행정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보

안정적인 문화재원의 확보는 향후 위원회가 위상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문화예술계의 젖줄 역할을 해왔던 문예진흥기금이 2003년 말 폐지되었고 2004년부터 로또복권 기금의 일부가 문화예술계로 유입되어 대체재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권기금은 문화예술의 항구적 재원이 될 수는 없으므로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은 영·미 사례와 같이 일차적으로 국가재정이거나 지자체의 예산에서 출연되어야 한다. 일례로 영국 예술위원회는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중 50%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를 사업비로 활용하였으나 이자 수익률 하락으로 이러한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또한 최근 문예진흥기금이 '민간자금'으로 전환될 것³⁾이 거의 확실해짐에 따라 향후 재원의 고갈 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동안 신규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경륜·경정 수익금의 분배' '민간 기부금의 활성화' '문화시설 입장료 수익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활용' '기업메세나를 통한 간접지원 확대' '골프연습장 등 수익사업의 추진' 등을 검토한 바 있다. 특히 열악한 문화예술 기부 시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일반 국민과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 확산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환경 조성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기부 문화 확산을 체계적으로 펴기 위한 전담팀 구성, 기부확산 캠페인활동, 기부모금 협력체계 구축, 기부 관련 세제 개선 등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문예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란 정부의 '기금' 형태가 폐지되고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본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사업 운영에 대한 자율권은 증대되지만, 복권기금의 전입 문제, 신규 재원의 고갈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